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5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・박 정・김홍걸

최혜영 • 유정주 •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• 서영교 의워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7호).

법률 제 호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• 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	제5조(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
	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
	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
	관한 사항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